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021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사단법인 B
검 사	조소인(기소), 정규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5. 3. 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사단법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단법인 B은 대전 동구 C에서 전통문화의 계승사업, 전통혼례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사단법인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B이 주최하는 'D'의 광고 포스터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E협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저작한 저작물인 'F'의 한복사진 1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 저작물을 복제, 전시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E협회), 저작권 침해 자료, 고소인 협회의 대회 관련 자료, 고소인 협회 홈페이지 게시 사진, 각 인터넷 기사, 각 포스터 사진, F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3-25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각 벌금은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판사 고영식 _____